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2011 - 51 - 176호 (사건번호 : 201106조사021)

안 건 명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27번지
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1. 9. 19.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 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1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단말기 보조금 개요

‹ ① 단말기 유통구조 ›

이통 3사 모두 수도권/경북/경남/호남/충청 단위로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 마케팅팀이 대리점(직영점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관리하며,

대리점 또는 대리점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개통과 동시에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통 3사 유통망 현황 비교 ›

구분	SKT	KT	LGU+(이하 "피심인")
본부	6본부 : 영업본부,수도권,부산, 대구,서부(광주),중부(대전), 기업사업본부/SMB사업본부 (법인)	7마케팅단 : 수도권강남/강북,경남, 경북,호남,충청,전략유통	4부문 19영업담당: 영업지원실-신유통 1부문-강남,강북,동부, 서부,남부 2부문-부산,경남,경북, 충청,호남 법인-융합 외 8개
지점	○○개	○○개	○○개
대리점	○○○○○개	○○○○○개	○○○○○개
판매점	약 ○○○○○○개	약 ○○○○○○개	약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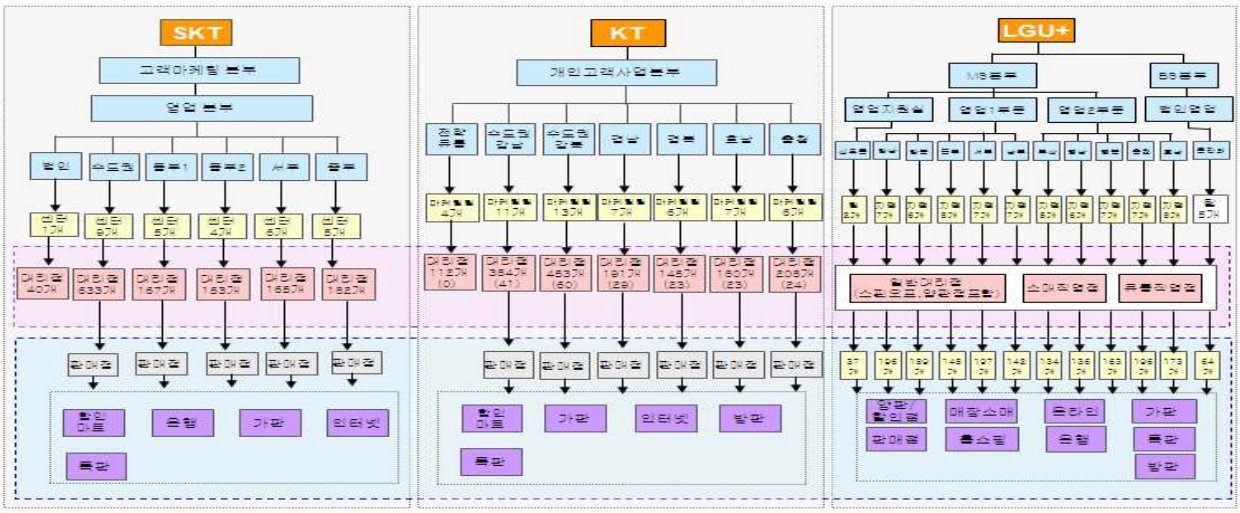

주: 소매-대리점직접판매/ 도매- 대리점 판매를 제외한 모든판매(판매점, 가판, 인터넷판매 등)
자료: 사업자제출자료(2006년 7월 말 기준)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11.8월 기준)

SKT는 계열관계에 있는 SK네트웍스(이하 "SKN")를 통해, KT와 피심인의 경우 제조사와 직접 모델사양·출고가·출고량 등을 협의하여 단말기를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SKT의 경우, SKN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SKT의 지역본부~대리점에서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통사 본사(또는 SKN)가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단말기를 "사업자 단말기", 지역본부~대리점에서 제조사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단말기를 "제조사 단말기"라고 하는데, SKT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단말기 중 제조사 단말기가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KT의 경우,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사와 대리점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 후 단말기를 본사에서 직접 공급받아 재차 대리점에 공급하고, LGU+의 본부~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다.

〈 이통 3사 단말기 유통구조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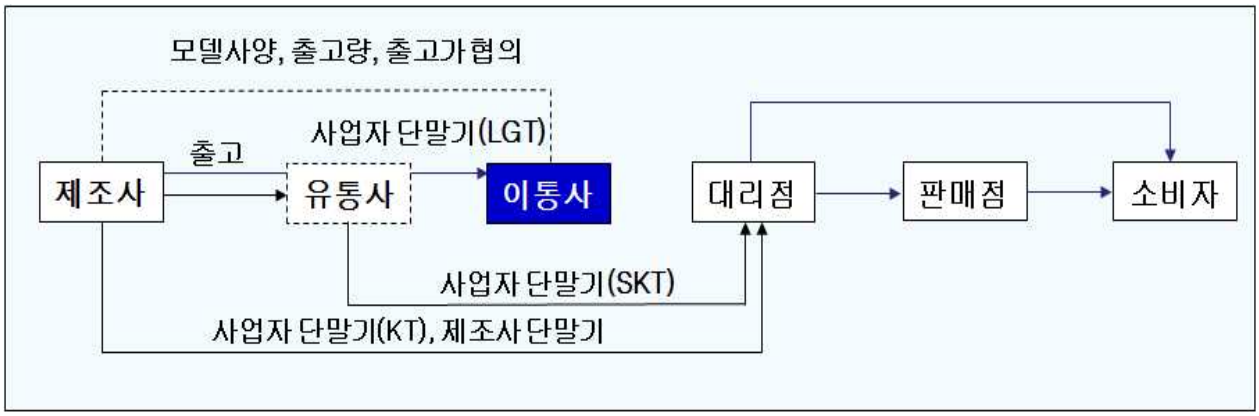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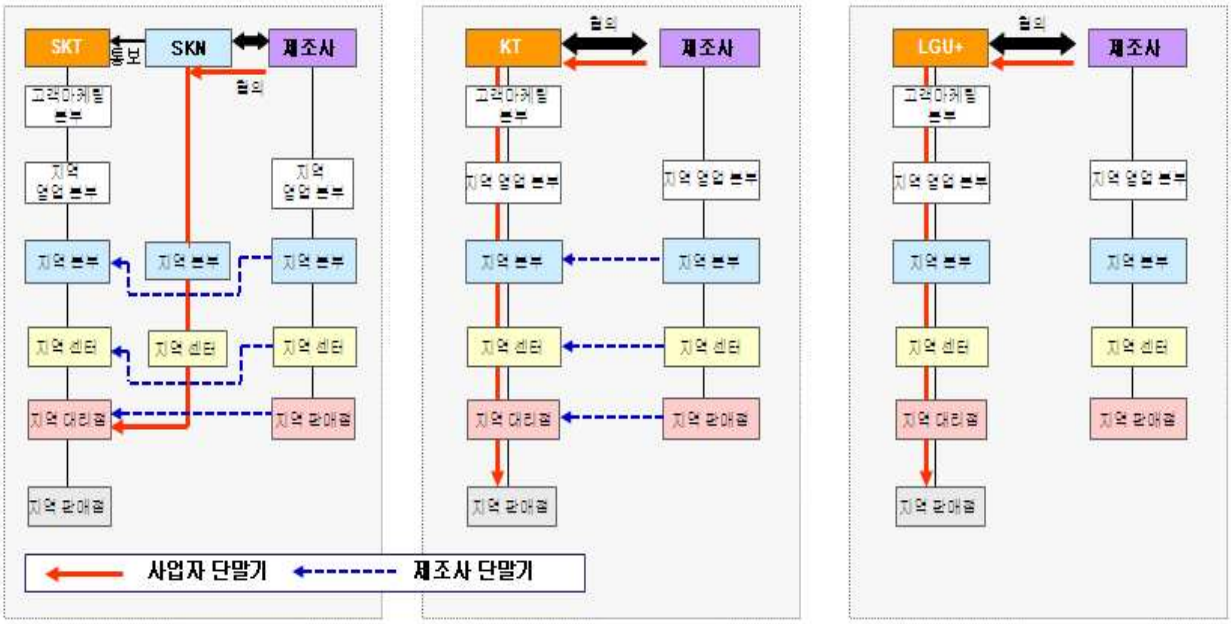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11.8월 기준)

〈 ② 단말기 보조금의 정의 〉

단말기 보조금이란 ①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②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약정外 보조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단말기와 연계되어 있어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기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보다 특정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므로 단말기 보조금이 주로 가입자 유치수단으로 활용된다.

한편,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단말기가 표준화된 시장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대신 현금·사은품 등 경품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약정 보조금은 약정기간(12~24개월)·지급시기(일시/월별 분할) 또는 단말기에 따라 1~16만원(LGU+ 기준)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보고서상 "통신 단말장치 구입 지원 비용"으로 분류된다.

〈 이통 3사 이용약관상 약정 보조금 관련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보조금 지급	o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o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사업자간 개별계약에 따름 o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음
약정 기간	o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 설정
위약금 납부	o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위약금 납부 ※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 LGU+의 약정 보조금 종류 〉

① 의무약정 :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시 단말기 가격을 일괄 할인해 주는 제도

② 더블할부 / YO할부 :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월 사용요금이 많은 고객이 할부로 개통할 경우 할부유지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제도

약정外 보조금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수수료 등을 轉用하여 지급되고, 이들 財源은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제외)" 및 "가입자관리비용"으로 분류된다.

※ 약정外 보조금의 세부 지급유형으로는 단말기 판매시 즉석에서 저가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할인판매", 가입비·채권 보전료·충전기 비용 등을 면제해 주는 "가입비 면제", 출고가로 판매하되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환불(Payback)" 등이 있고, 할인판매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 ③ 약정外 보조금의 財源 〉

약정外 보조금의 財源은 ① 판매 장려금(이통사→대리점), ② 약정 수수료(이통사→대리점) 및 ③ 제조사 장려금(제조사→대리점)으로 구성된다.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영업 정책에서 정한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rebate)로서,

※ 영업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매월 수회~수십회 배포되고, 본사→지역본부→대리점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별 정책이 가미될 수 있음

재고물량 소진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특정 단말기(비인기 단말기 또는 인기·최신 단말기)를 전략 단말기로 설정,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략 단말기 정책"이 대표적이다.

〈 전략 단말기 정책 예시 〉

업 무 연 락 2011. 06. 14.

문서번호 : 영업정책 1106 – 18
수 신 : 판매추진팀장
참 조 : 부문장 /영업담당/ 지점장
발 신 : 영업정책팀장
기 안 : [redacted]
제 목 : 11년 6월 피처폰 판매활성화 정책 2차 변경 외

입 안	조 정	결 정	확 인
		결재필	

수제 건 관련,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피처폰 판매활성화 정책 2차 변경 [code : G9p]

◆ 기간 : '11년 6월 15일 이후 ~ 별도공지 시까지
◆ 적용 채널 : 대리점/유통직영점
◆ 지급 기준 : 신규/정책기변
◆ 유치 수수료 : 상품별 유치 건당 지급(더블보너스 할부 및 슈퍼세이브 상품은 변경없음)

		변경 전	변경 후
code	대상모델	무약정/의무약정/더블보너스약정	무약정/의무약정/더블보너스약정
G9p	LG-LU2700	407,000	429,000
	LG-LV8500	231,000	209,000
	SHW-A220L	242,000	275,000
	CANU-T1200	473,000	528,000

2. 소매직영점 판가할인 정책 2차 변경 [code : DRS]

◆ 기간 : '11년 6월 15일 ~ 별도 공지시까지 ◆ 대상 : 소매직영점 (롯데마트 포함)
◆ 적용 기준 : 신규/정책기변

모델	보조금		판가할인수준 (신규)				정책기변			
	의무약정	보조금랜드	의무약정	더블 보너스 약정	더블 보너스 할부	S/S	의무약정	더블보너스 약정	더블보너스 할부	S/S
			010/MNP	010/MNP	010/MNP	010/MNP				
CANU-T1200	120,000	40,000	422,000	350,000	291,000	279,800	312,000	240,000	241,000	229,800

LG U+

약정 수수료는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실적 또는 위탁 업무의 처리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서비스 개통시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나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시 해당 가입자의 월 요금 수납액의 4~11%를 48개월간 지급받게 되는 "가입고객관리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약정 수수료 종류 〉

구분	개통 수수료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단말기 기변 수수료	기타 수수료(예시)
조건·금액	건당 20,000원	월 요금 수납액의 약 4~11% (48~60개월 지급)	월 요금 수납액의 약 5% (9~48개월 지급)	요금수납 수수료 : 수납액의 1.2% 자동이체 수수료 : 2,000원

제조사 장려금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리베이트로서,

협의 주체에 따라 "기본정책"(제조사 본사-이통사 본사)·"계약대리점 정책"(제조사-특정 대리점)으로, 제공 방식에 따라 종량제·정액제로 구분된다.

※ (종량제) 0~10건 : 건당 2만원 / 11~100건 : 건당 3만원, (정액제) 100건 이상 500만원

대리점은 이러한 財源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을 결정, 이에 따른 적정 판매가를 "단가표" 형식으로 판매점에 배포하고, 판매점은 고객과 홍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한다.

〈 대리점 단가표(예시) 〉

5월12일~

LG U+

피쳐폰은 표준플러스(기본료 W13,000)로 유치하세요

제조사	구분	모델명	폰명	출고가	의무약정 신규(24개월기준) 가입비 010신규	가입비 번호이동	010신규	번호이동 SKT	번호이동 KT	의무약정 신규(1 가입비 010신규	가입비 번호이동	010신
LG	주력전략	LG-LU4300	롤리팝II	555,500	30,000	30,000	0	0	0	30,000	30,000	40,0
	단종	LG-LU4500	키플폰	121,000	30,000	30,000	100,000	100,000	100,000	30,000	30,000	140,0
삼성	재고소진	SPH-W8350	매직 홈	499,400	30,000	30,000	0	0	0	30,000	30,000	40,0
	재고소진	SPH-W9350	코비폴더	528,000	30,000	30,000	80,000	80,000	80,000	30,000	30,000	120,0
팬택	재고소진	IM-U680L	웨딩폰	555,000	면제	면제	0	0	0	30,000	30,000	40,0
	재고소진	IM-U620L	웰파이폰	638,000	30,000	30,000	80,000	80,000	80,000	30,000	30,000	120,0
	스마트 주력	IM-A720L	베가 x	814,000	30,000	30,000	790,000	790,000	790,000	30,000	30,000	830,0

1. 대리점/유통직영점 스마트폰 가입비 면제 정책

◆ 기간 : '11년 5월 1일 ~ 별도 공지시까지
◆ 적용 채널 : 대리점, 유통직영
◆ 지급 기준 : 신규
◆ 대상모델 : LU2300, LU3000, LU3100, LU3700, LU6800, M130L, M180L, M220L, A690L, A720L (M250L은 제외함)
◆ 대상 요금제 : OZ스마트45, 55, 65, 75, 95 / OZ PAD 4G / 스마트 yo (총 7개 요금제)
※ 대상 요금제를 제외한 요금제는 가입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스마트폰 보증보험료 면제 정책

◆ 기간 : '11년 5월 1일 ~ 별도 공지시까지
◆ 대상모델 : LU2300, LU3000, LU3100, LU3700, LU6800, M130 (M250L은 제외함)
◆ 지급 기준 : 신규, 정책기변
◆ 적용 채널 : 대리점, 유통직영, 소매직영(롯데마트 포함)
◆ 작업시 유의 사항 :
- 보증보험료 수납 방법을 반드시 [6익월청구] 옵션 선택 요

〈 단말기 보조금 財源 및 보조금 창출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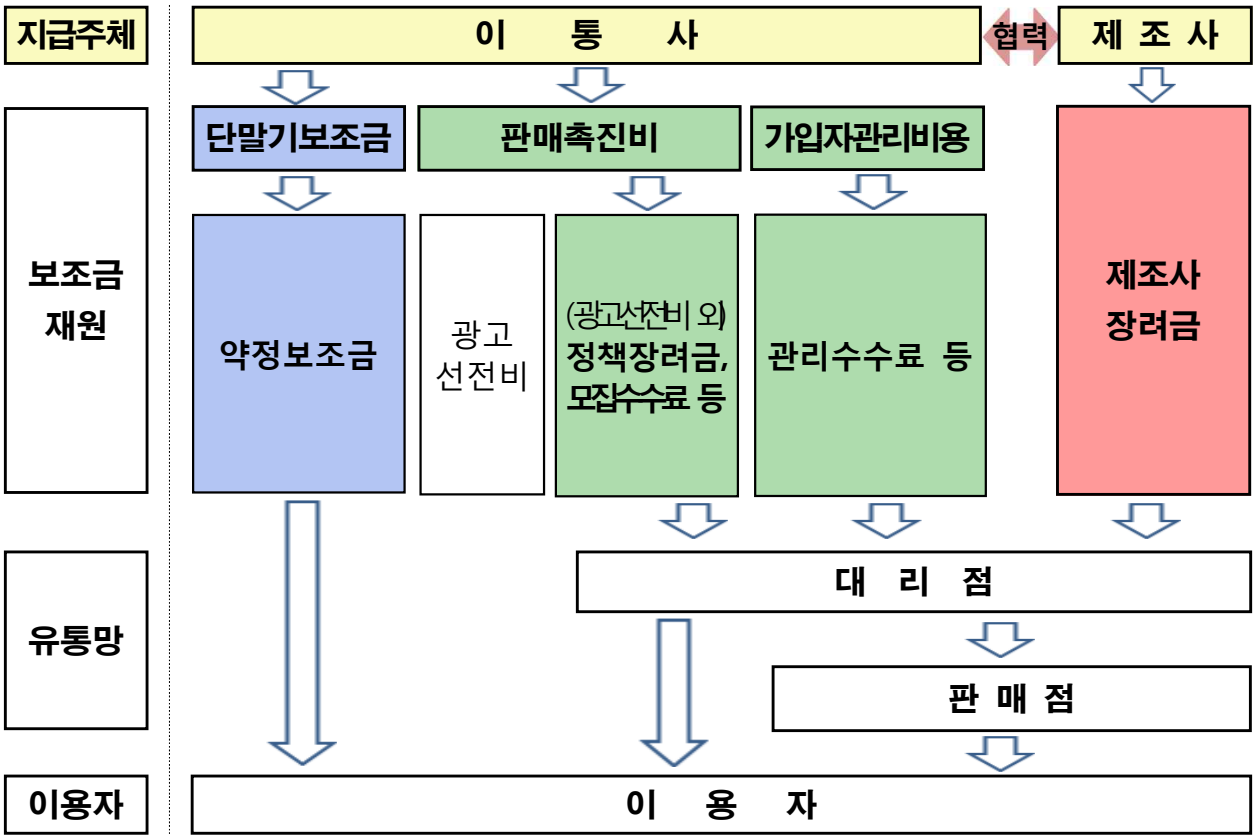

※ KT 및 LGU+의 제조사 장려금 중 일부(출고가 대비 납품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통사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는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에 포함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 ①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예시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

'10.9.24일 방통위는 LGU+ 등 이통 3사가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3]하고,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다.

다. ’11년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현황

〈 ①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월 89.9만건에서 4월 69.5만건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94.1만건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월별) 〉

(단위 : 건)

	SKT	KT	LGU+	합계
1월	368,996	340,519	190,058	**899,573**
2월	305,794	267,520	175,884	749,198
3월	282,621	239,099	180,576	702,296
4월	281,453	242,186	171,809	695,448
5월	378,429	339,363	223,442	**941,234**
6월	348,006	332,283	215,134	895,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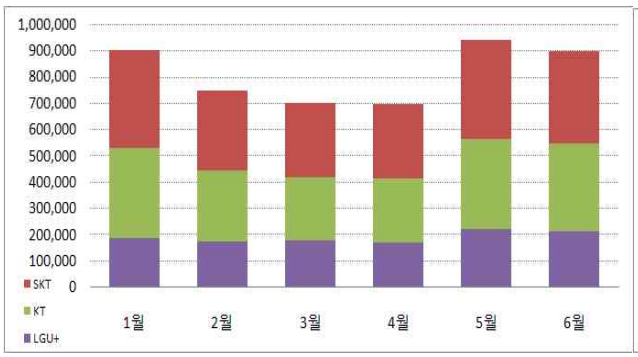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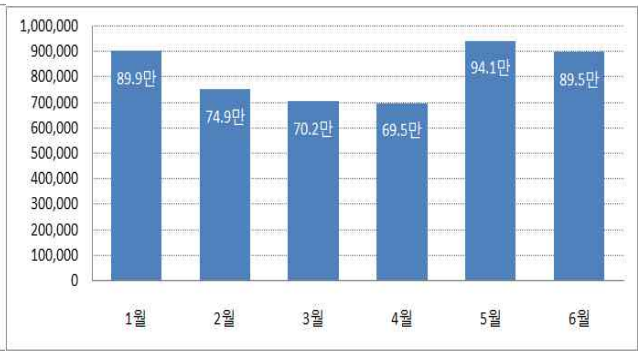

특히, 4월4주(24~30일) 17.8만건에서 5월1주(1~7일) 22.5만건으로 21% 상승하는 등 4월4주를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바,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주별) 〉

(단위 : 건)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SKT	71,334	81,781	101,818	92,748	58,610	79,583	80,205	88,715	67,135
K T	80,258	95,394	71,557	75,532	46,965	78,289	72,758	70,882	58,471
LGU+	54,073	41,457	39,609	44,150	36,800	50,573	43,558	43,964	43,092
합계	205,665	218,632	212,984	212,430	142,375	208,445	196,521	203,561	168,698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SKT	64,004	70,958	62,249	57,314	61,969	58,359	66,367	75,715	92,504
K T	55,545	53,169	51,215	52,392	53,171	57,559	53,096	63,071	80,174
LGU+	44,108	38,661	39,592	38,684	38,349	41,379	40,071	40,207	52,981
합계	163,657	162,788	153,056	148,390	153,489	157,297	159,534	**178,993**	**225,659**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평균
SKT	89,421	72,122	85,279	89,286	70,249	89,519	81,173	75,553
K T	76,859	70,433	76,867	81,279	77,553	88,810	69,531	67,500
LGU+	49,543	50,673	51,322	47,204	46,069	57,392	48,290	44,179
합계	215,823	193,228	213,468	217,769	193,871	235,721	198,994	187,232

이는 4.29일 출시된 갤럭시 S2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갤럭시 S2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4.29~5.25일) >

(단위 : 건)

구분	갤럭시S2 판매량	전체 단말기 판매량	스마트폰 판매량	전체 단말기 중 스마트폰 비중	전체 단말기 중 갤럭시S2 비중	스마트폰 중 갤럭시S2 비중
SKT	○○○,○○○	1,268,854	○○○,○○○	○○.○%	○○.○%	○○.○%
K T	○○○,○○○	719,270	○○○,○○○	○○.○%	○○.○%	○○.○%
LGU+	○○○,○○	311,492	○○○,○○○	○○.○%	○○.○%	○○.○%
합계	609,637	2,299,616	1,606,275	69.8%	**26.5%**	**38.0%**

한편,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은 KT가 3.3만건으로 순증을 기록한 반면, SKT는 -3.1만건, LGU+는 -0.2만건으로 순감을 기록하였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 추이(주별) >

(단위 : 건)

주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SKT	-20,795	-17,270	20,067	5,701	198	-9,914	-1,216	8,669	-1,479
K T	13,604	28,855	-2,497	4,168	-3,001	8,752	5,982	-1,084	-213
LGU+	7,191	-11,585	-17,570	-9,869	2,803	1,162	-4,766	-7,585	1,692
순증1위	K T	K T	SKT	SKT	LGU+	K T	K T	SKT	LGU+
순증3위	SKT	SKT	LGU+	LGU+	K T	SKT	LGU+	LGU+	SKT

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SKT	-2,615	9,333	2,091	-2,690	779	-7,278	3,710	5,998	3,259
K T	-1,618	-6,454	-4,129	407	-2,153	3,013	-5,569	-3,465	-4,313
LGU+	4,233	-2,879	2,038	2,283	1,374	4,265	1,859	-2,533	1,054
순증1위	LGU+	SKT	SKT	LGU+	LGU+	LGU+	SKT	SKT	SKT
순증3위	SKT	K T	K T	SKT	K T	SKT	K T	K T	K T

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총합계
SKT	3,437	-8,792	-1,517	1,484	-13,198	-9,942	892	**-31,088**
K T	-4,203	-153	-2,544	1,125	10,298	3,914	-5,309	**33,413**
LGU+	766	8,945	4,061	-2,609	2,900	6,028	4,417	**-2,325**
순증1위	SKT	LGU+	LGU+	SKT	K T	LGU+	LGU+	K T
순증3위	K T	SKT	K T	LGU+	SKT	SKT	KT	S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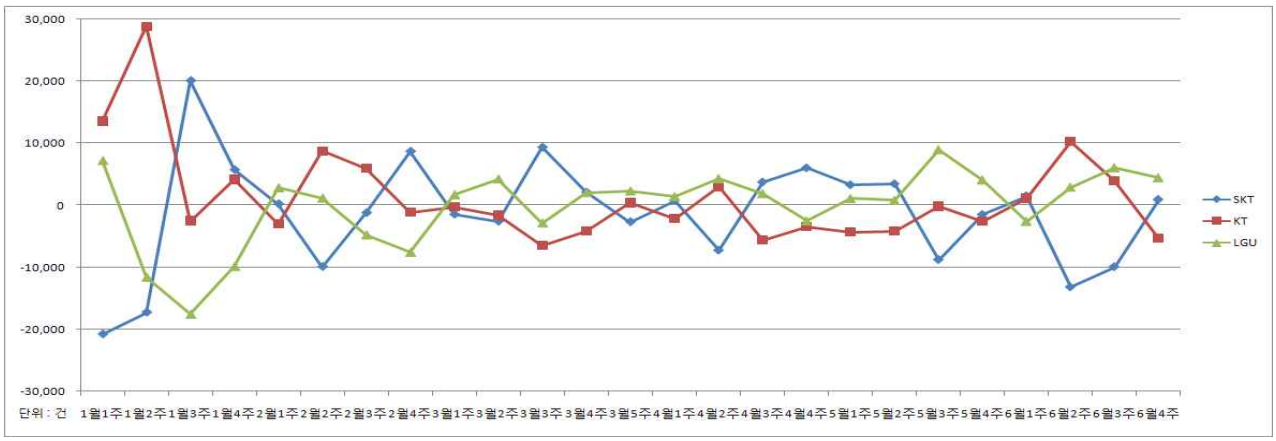

SKT는 4월까지 월 상반기(1~2주)에는 순감을 보이다가 월 하반기에 이를 회복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으나, 5월부터는 반대 양상을 보였고,

〈 SKT의 월 상반기/하반기 번호이동 순증 비교 〉

(단위 :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월 상반기	-38,065	-9,716	-4,094	-6,499	6,696	-11,714
월 하반기	25,768	7,453	8,734	9,708	-10,309	-9,050

KT는 1/2월에는 우위를 보인 반면(42,772건 순증), 3월 이후 대부분 週에서 순감을 기록(7,964건 순감)하였으며,

LGU+는 1/2월 대부분 週에서 순감을 보였으나(40,219건 순감), 3월 이후 대부분 순증을 기록(27,449건 순증)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1~3월)는 KT(4.4만건)→SKT(-1.0만건)→LGU+(-3.3만건) 순으로 KT, 2분기(4~6월)는 LGU+(3.4만건)→KT(-1.3만건)→SKT(-2.1만건) 순으로 LGU+의 실적이 두드러진다.

〈 '11년 상반기 번호이동 순증 추이(월별)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4월	5월	6월	*2분기*
SKT	-11,397	-2,237	2,638	*-10,996*	4,285	-1,804	-23,602	*-21,121*
K T	45,040	9,119	-9,726	***44,433***	-9,835	-9,834	6,139	*-13,530*
LGU+	-33,643	-6,882	7,088	*-33,437*	5,550	11,638	17,463	***34,651***

〈 ② 마케팅비 추이 〉

'11년 상반기 이통 3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18.7~20.0%)을 제외하고는 방통위가 연초 제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 21.4%(마케팅비는 ○○○○) → ○○○ 23.6%(○○○○) → ○○○ 23.9%(○○○○) 순이며, 유·무선간 조정금액(125억원/월)*을 반영하지 않으면 ○○○ 23.4% → ○○○ 23.6% → ○○○ 28.3% 순으로 나타났고,

※ Wibro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을 겸영하는 KT와 LGU+에 대해서는 '10년에는 1,000억원, '11년에는 1,5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조정을 허용

마케팅비 지출 1위 횟수는 ○○○ 4회(1~4월), ○○○ 2회(5·6월)로 나타났다.

〈 '11년 상반기 이통 3사별 이동통신 마케팅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SKT	매 출 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K T	매 출 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LGU+	매 출 액							
	마케팅비							
	마케팅비율							
	조정 비율							
계	매 출 액	19,163	18,190	19,513	19,165	19,961	19,540	115,532
	마케팅비	4,850	4,871	4,623	4,297	4,823	4,530	27,994
	마케팅비율	25.3%	26.8%	23.7%	22.4%	24.2%	23.2%	24.2%
	조정 비율	24.0%	25.4%	22.4%	21.1%	22.9%	21.9%	22.9%

〈 ③ '11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변화 〉

'11.6월 기준 SKT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대비 상승(50.63%→50.76%)한 반면, KT와 LGU+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KT 31.60%→31.49%, LGU+ 17.77%→17.75%)하였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최소 69.5만건(4월)·최대 94.1만건(5월)에 이르는 등 과열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전체 가입자수는 '10년말 대비 1.93% 성장하는데 그쳤다('10년말 50,768천명 → '11.6월말 51,750천명).

〈 '11년 상반기 이동전화 시장 가입점유율 변화 〉

(단위 : 천명)

구분	'10.12월말		'11.3월말		'11.6월말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SKT	25,705	50.63%	25,989	50.60%	26,269	50.76%
K T	16,041	31.60%	16,299	31.73%	16,296	31.49%
LGU+	9,022	17.77%	9,077	17.67%	9,185	17.75%
합계	50,768	100.00%	51,365	100.00%	51,750	100.00%

라. 사전점검 결과(시장 모니터링 지표)

4월3주(4.17~23일)부터 6월2주(6.5~11일)까지 8주간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6.21일 이통 3사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 시장 모니터링 지표 세부내용 〉

1 개요

o 주 단위로 시장**과열 판단**(1단계) → 과열 시기에 사업자별로 **벌점 부과**(2단계) → 과열 지속기간 및 누적 벌점에 따라 경고, 제재 등 **단계적 조치**(3단계)

2 1단계 : 과열 판단

o **(원칙 : 번호이동 규모)** 해당週의 일평균 번호이동이 **2.2만건**을 초과하면 "**과열**"로 판단

- 2.2만건은 최근 3년('08~'10년) 일평균 번호이동(22,812건)을 참조

o **(예외① : 하락 추세) 2주 연속** 일평균 번호이동이 하락하고, **2.5만건 이하**면 "**안정**"으로 판단

- **사업자의 시장안정 노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과 '10년 일평균 번호이동 실적(24,651건)을 고려

o **(예외② : 단말기·서비스 신규 출시)** 높은 번호이동 실적이 **새로운 단말기나 서비스 출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정**"으로 판단

- 혁신적인 서비스 및 이와 연계된 단말기 경쟁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다만, 사업자의 편법적 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소명을 제출**받고, **최대 3주**(출시週 포함)만 예외 인정

③ 2단계 : 벌점 부과

o "**과열**"시 週단위로 최대 100점의 벌점을 부과

- 주요 지표인 ①**보조금 모니터링**에 40점, ②**표본조사**에 20점을 각각 배분하고,

- 보조 지표인 ③**번호이동 순증**에 10점, ④**마케팅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에 10점, ⑤인당 확보비에 5점, ⑥판매점 단가표에 5점, ⑦불·편법 영업 자율규제 실적에 10점을 배분하여 벌점을 조정

④ 3단계 : 단계적 조치

o **(원칙) 과열이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치를 시행

- 과열이 **2주 지속**되면 마케팅 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경고**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 과열이 **3주 지속**되면 그 정도에 따라 ①이통 3사의 본사·유통망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 ②최초 과열시점(1주)부터 3주차까지 **누적 벌점**으로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여 **선별 조사**에 착수하고,

- 조사중 **누적 벌점**, 조사 전후의 **각종 보조지표**(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인당 확보비 등)를 제재시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로 고려

o **(예외)** 누적 벌점은 높지만 동 기간 번호이동 순증 등을 볼 때 **주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를 **유보**하거나 대상을 변경

- 아울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표본조사나 실태점검을 방해하는 사업자**는 누적 벌점과 무관하게 **즉시 조사**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최소 2.2만건(4월3주)·최대 3.2만건(5월1주)로 8주 모두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2만건을 초과하나,

5월1주와 2주(5.1~14일)는 새로운 단말기 출시(SKT·KT 4.29일/LGU+ 5.1일 갤럭시 S2 출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므로 6주(4월3·4주, 5월3주~6월2주)가 과열에 해당하고,

5월3주부터 6월2주까지 4주 연속 과열이 지속되었으므로 지표상 사실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

〈 4월3주~6월2주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단위 : 건)

구분	4월3주	4월4주	5월1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평균
전체	22,791	25,570	32,237	30,832	**27,604**	**30,495**	**31,110**	**27,696**	28,542
SKT	*9,481*	*10,816*	*13,215*	*12,774*	*10,303*	*12,183*	*12,755*	*10,036*	*11,445*
KT	*7,585*	*9,010*	*11,453*	*10,980*	*10,062*	*10,981*	*11,611*	*11,079*	*10,345*
LGU+	*5,724*	*5,744*	*7,569*	*7,078*	*7,239*	*7,332*	*6,743*	*6,581*	*6,751*

이때 과열에 해당하는 4월3·4주 및 5월3주~6월2주 누적 벌점은 ○○○(283점) → ○○○(260점) → ○○○(237점) 순으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LGU+의 과열기간(4월3·4주 및 5월3주~6월2주) 벌점 〉

구분	4월3주	4월4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보조금 모니터링	○○점	○○점	○○점	○○점	○○점	○○점
번호이동 순증	○점	○점	○점	○점	○점	○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점	○점	○점	○점	○점	○점
표본조사	○○점	○○점	○○점	-	-	-
합계	○○점	○○점	○○점	○○점	○○점	○○점

다만, 위 기간 3사 모두 보조금 모니터링이나 표본조사에서 파악된 평균 보조금이 27만원을 항상 초과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3사 모두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마.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9,185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17.75%,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35,064억원으로 15.36%를 점유하고 있다('10.12월말 기준).

〈 이동전화 시장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SKT	KT	LGU+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6,269 (50.76)	16,296 (31.49)	**9,185** **(17.75)**	51,750 (100.0)
매 출 액 (점유율, %)	123,260 (53.91)	70,301 (30.75)	**35,064** **(15.36)**	228,625 (100.0)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제출자료(2010년 영업보고서)

2. 사실조사 결과

가. 현장조사 개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6.21일부터 7.31일까지 피심인의 본사·전국 주요권역의 지점 및 대리점 등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11년 상반기(이하 "조사대상 기간")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영업정책·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전산자료·이메일 및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차별적 보조금 책정

〈 ① 영업정책 배포 (이통사 → 대리점) 〉

피심인은 '11년 상반기 단말기·연령대·판매수량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된 각종 영업정책을 일선 유통망에 배포하였다.

영업정책은 매월 1일 유통망에 서면으로 배포되나, 세부 정책 및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차례 변동되고, 이메일·SMS 및 개통전산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망에 전파되었다.

〈 영업정책 예시 〉

대외비

피처폰 판매활성화 정책 [code : G9p]

◆ 기간 : '11년 6월 1일 ~ 별도공지 시까지
◆ 적용 채널 : 대리점/유통직영점
◆ 지급 기준 : 신규/정책기변
◆ 유치 수수료 : 상품별 유치 건당 지급

대상모델	무약정/의무약정/더블보너스약정	더블보너스할부/yo더블	슈퍼세이브
LG-LB4400	451,000	231,000	396,000
LG-LU1600	264,000	132,000	297,000
LG-LU2700	407,000	209,000	319,000
LG-LU4300	330,000	209,000	374,000
LG-LV8500	231,000	143,000	308,000
SHC-Z120L	198,000	165,000	330,000
SHW-A220L	242,000	11,000	154,000
SHW-A280L	154,000	55,000	187,000
SPH-W8350	363,000	187,000	363,000
SPH-W9350	253,000	77,000	220,000
CANU-T1200	473,000	0	165,000
IM-U620L	462,000	253,000	418,000
IM-U680L	418,000	187,000	363,000

9/15 '11년 6월 정책

Ⅶ. 6월 소매직영점 정책

대외비

소매직영점 판가할인 정책 [code : DRS]

◆ 기간 : '11년 6월 1일 ~ 별도공지 시까지
◆ 대상 : 소매직영점 (롯데마트 포함)
◆ 적용 기준 : 신규/정책기변
◆ 참고 : 할인 상품에 따라 판가 할인 정책 적용

모델	보조금		판가할인수준 (신규)				정책기변			
	의무약정	보조금밴드	의무약정	더블 보너스 약정	더블 보너스 할부	S/S	의무약정	더블보너스 약정	더블보너스 할부	S/S
			010/MNP	010/MNP	010/MNP	010/MNP				
LG-LU1600	120,000	40,000	245,400	173,400	163,400	152,200	195,400	123,400	113,400	102,200
SHC-Z120L	120,000	40,000	185,400	113,400	163,400	152,200	135,400	63,400	113,400	102,200
SPH-W8350	120,000	40,000	289,400	217,400	207,400	196,200	179,400	107,400	157,400	146,200
LG-LU2700	120,000	40,000	330,000	258,000	258,000	246,800	220,000	148,000	208,000	196,800
IM-U680L	120,000	40,000	345,500	273,500	263,500	252,300	235,500	163,500	213,500	202,300
LG-LU4300	120,000	40,000	305,500	233,500	263,500	252,300	195,500	123,500	213,500	202,300
LG-LB4400	120,000	40,000	392,000	320,000	280,000	268,800	282,000	210,000	230,000	218,800
SPH-W9350	120,000	40,000	184,000	112,000	82,000	70,800	74,000	2,000	32,000	20,800
IM-U540L	120,000	40,000	361,000	289,000	269,000	257,800	251,000	179,000	219,000	207,800
SHW-A220L	120,000	40,000	209,300	137,300	107,300	96,100	99,300	27,300	57,300	46,100
IM-U620L	120,000	40,000	408,000	336,000	346,000	334,800	298,000	226,000	296,000	284,800
SPH-W9050	120,000	40,000	443,500	371,500	351,500	340,300	333,500	261,500	301,500	290,300
LG-LU3700	120,000	40,000	0	0	302,000	310,800	0	0	252,000	260,800
IM-A690L	120,000	40,000	1,000	0	379,000	367,800	0	0	329,000	317,800
LG-LU3100	120,000	40,000	6,000	0	434,000	422,800	0	0	384,000	372,800
CANU-T1200	120,000	40,000	393,000	321,000	291,000	279,800	283,000	211,000	241,000	229,800
LG-LU2300	120,000	40,000	9,800	0	487,800	596,600	0	0	437,800	546,600
LG-LU3000	120,000	40,000	0	0	287,000	283,800	0	0	237,000	233,800
IM-A720L	120,000	40,000	5,500	0	353,500	371,100	0	0	303,500	321,100
SHW-M130L	120,000	40,000	0	0	267,700	285,300	0	0	217,700	235,300
SHW-M180L	0	0	224,400	198,400	0	224,400	174,400	148,400	0	174,400
SHW-M220L	120,000	40,000	0	0	287,600	264,400	0	0	237,600	214,400
SHW-A280L	120,000	40,000	83,000	11,000	71,000	59,800	0	0	21,000	9,800
LG-LU6800	120,000	40,000	0	0	195,000	292,600	0	0	145,000	242,600
SHW-M250L	120,000	40,000	0	0	0	81,400	0	0	0	31,400
LG-LV8500	120,000	40,000	208,500	136,500	186,500	175,300	98,500	26,500	136,500	125,300
출고가 99,000원	40,000	40,000	18,000	0	0	0	8,000	0	0	0
출고가 121,000원	40,000	40,000	40,000	0	0	0	30,000	0	0	0
출고가 198,000원	40,000	80,000	8,000	0	0	0	0	0	0	0
출고가 220,000원	40,000	80,000	10,000	0	0	0	0	0	0	0
출고가 231,000원	40,000	80,000	21,000	0	0	0	11,000	0	0	0

[유의 사항]

1. 의무약정/더블 보너스 약정(선불형)은 반드시 보조금 밴드 적용
2. 할인 상품 적용시 작업 오류 건, fraud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3. 무약정 유치시 판가 할인 적용 없음. (일반 시판 정책으로 적용)
4. TOP 요금제는 의무약정 기준 적용
5. 판가할인 금액 내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가입축하할인(요금할인)으로 전환 가능함(기변 포함, 롯데마트 포함)
6. SHW-M180L은 S/S 금액이 PAD약정할인 금액임.
7. SHW-M250L은 상품구분없이 스마트65 이상 개통시 52,800원 판가할인 적용함. (전산에서 판매가를 794,200원으로 직접 입력하면 됨.)

※ 상품별 정책 적용 대상
1) 의무 약정 : 의무 약정 + 보조금 밴드 + 판가 할인
2) 더블 보너스 약정 : 더블 보너스 약정 + 보조금 밴드 + 판가할인
3) 더블 보너스 할부 / yo 더블 : 더블 보너스 할부 + 판가할인
4) 슈퍼세이브 : 판가 할인만 적용 (스마트yo요금제는 슈퍼세이브 정책 적용)
5) 무약정: 판가 할인 없음. (일반 시판 정책으로 입력)
6) TOP 요금제 : 의무약정 + 보조금 밴드 + 판가할인 (의무약정 기준)

14/15 '11년 6월 정책

한편,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IM-A720L(베가X), LG-LU3000(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3만원)와 보증보험료(2만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13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 가입비 및 보증보험료 면제정책 개요 〉

구분		가입비	보증보험료
대상	가입 형태	o 일반신규 및 번호이동 신규 o 기기변경('11.1~4월의 경우 재가입자는 제외)	
	단말기	o 1. 1일~ : SHW-M180L 제외한 슈퍼세이브 가입 단말기(가입비에 限) o 1. 21일~ : LG-LU3000(보증보험료에 限) o 1. 28일~ : LG-LU2300/LU3100/LU3700, SHW-M130L, IM-A690L/A720L o 2. 1일~ : LG-LU3000, SHW-M180L 추가 o 4. 1일~ : AL220L 추가 o 5. 1일~ : LU6900 추가 o 5. 21일~ : M250L 추가	
	요금제	o 2. 1일~ : OZ스마트45~95 등 o 5. 21일~ : M250L 스마트45 제외 o 6. 1일~ : LU6800 스마트45 제외	-
면제방식		o 1월~3월 : "분납" 등록후 익월 요금할인(3만원)이나, "완납" 등록후 유통망에 수수료(3만3천원) 지급 o 4월~6월 : "익월청구(청구서일시납)" 등록 후 익월 요금할인(3만원)	o 1월~3월 : "분납" 등록후 월말 일괄 조정 o 4월~6월 : "익월청구(청구서일시납)" 등록 후 월말 일괄 조정

〈 ② 단가표 작성 및 배포 (대리점 → 판매점) 〉

피심인의 영업정책을 바탕으로 대리점은 먼저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윤을 고려하여 단말기별로 적정 판매단가를 산정하였고,

이후 대리점은 단말기별 적정 판매가와 마진이 기재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초로 고객과 개별 흥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 대리점 단가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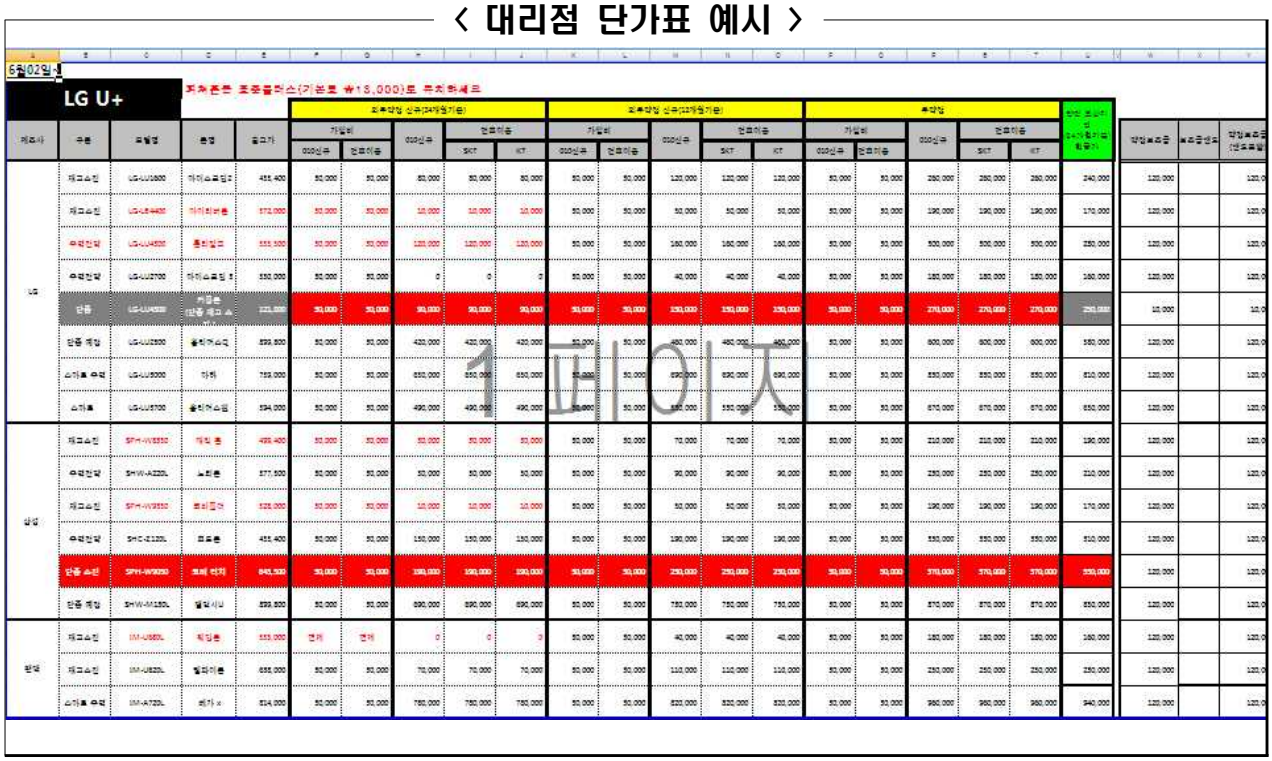

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 ① 조사대상 건수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번호이동/일반 신규 가입 138,715건(번호이동 신규 79,398건, 일반 신규 59,317건), 기기변경 38,777건 등 총 177,492건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신규	25,704	27,207	30,694	22,602	19,060	13,448	**138,715**
번호이동	*14,462*	*15,063*	*17,336*	*12,474*	*11,695*	*8,368*	*79,398*
일반	*11,242*	*12,144*	*13,358*	*10,128*	*7,365*	*5,080*	*59,317*
기기변경	7,547	4,575	6,593	7,568	8,130	4,364	**38,777**
총합계	33,251	31,782	37,287	30,170	27,190	17,812	**177,492**

이때,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자나 선불요금제 가입건, 일반 단말기가 아닌 태블릿 PC나 무선인터넷 모뎀 개통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② 시기별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건당 지급된 보조금 평균액은 30.7만원,

동 기간 판매된 단말기는 63종으로 평균 출고가는 68.2만원,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45%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2월에 35.2만원(보조율 54.14%)·36.8만원(5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3월 32.4만원/46.8% → 6월 19.9만원/28.1%)하였고,

〈 보조금·보조율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출고가	651,434	695,929	693,753	646,612	713,359	710,229	682,858
보조금	352,187	368,824	**324,938**	295,214	239,754	**199,447**	307,206
보조율	54.1%	53.0%	**46.8%**	45.7%	33.6%	**28.1%**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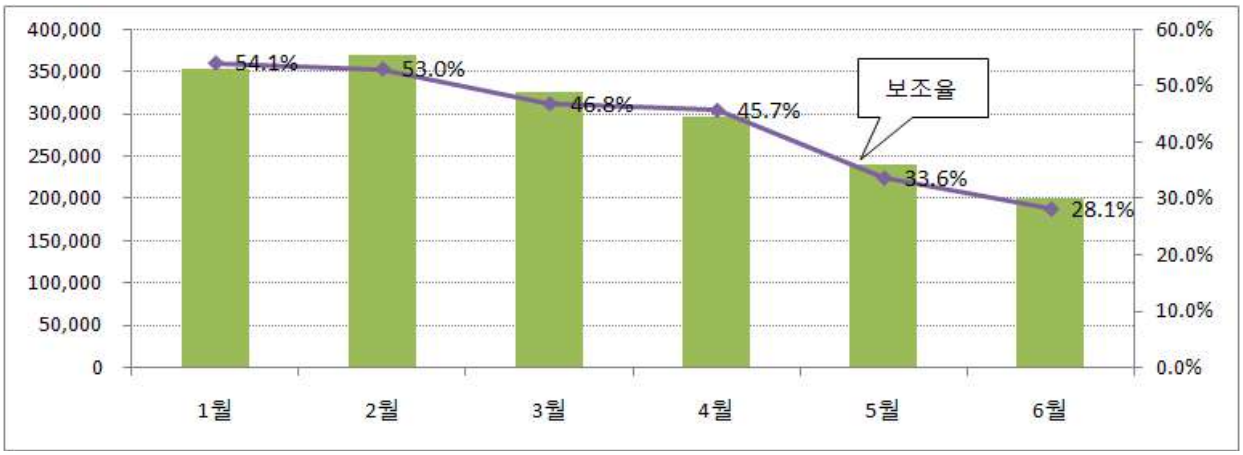

주별로는 2월2주(6~12일)가 36.7만원(53.4%)으로 가장 높은 보조금 및 보조율을 보인 반면, 6월4주(19~25일)는 19.3만원(26.8%)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보조금/보조율 변동 추이(주별) 〉

(단위 : 원)

구분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출고가	645,710	641,125	639,000	674,832	679,156	687,680	692,934	713,948	705,013	694,218	692,741	689,135	672,559
보조금	355,719	351,164	350,357	352,587	363,545	**367,260**	366,864	370,500	359,206	342,053	317,925	307,156	302,565
보조율	55.1%	54.8%	54.8%	52.2%	53.5%	**53.4%**	52.9%	51.9%	51.0%	49.3%	45.9%	44.6%	45.0%

구분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5월2주	5월3주	5월4주	6월1주	6월2주	6월3주	6월4주	전체
출고가	617,279	647,234	656,726	674,994	710,156	709,875	715,087	715,152	704,671	709,604	710,039	723,423	682,858
보조금	287,664	293,204	291,984	301,880	242,771	250,631	237,056	229,511	215,008	201,156	201,960	**193,678**	307,206
보조율	46.6%	45.3%	44.5%	44.7%	34.2%	35.3%	33.2%	32.1%	30.5%	28.3%	28.4%	**26.8%**	45.0%

〈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31.3만원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28.5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2.7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간 중 1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신규 가입자에게 최소 1.3만원, 최대 5.6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였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평균 보조금 변동 추이(월별) 〉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신규 가입자	350,646	376,907	323,943	298,615	246,998	206,304	313,175
기기변경 가입자	357,433	320,754	329,570	285,057	222,771	178,315	285,851
보조금 차이	-6,787	**56,153**	-5,628	**13,558**	24,227	27,990	**27,324**

보조금 수준별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는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56.7%를 차지한 반면, 기기변경은 30만원 이하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47.1%를 차지하였다.

〈 보조금 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가입자	27,544	14,657	17,892	26,249	28,016	24,357
(점유율)	(19.9%)	(10.6%)	(12.9%)	**(18.9%)**	**(20.2%)**	**(17.6%)**
기기변경 가입자	8,023	5,280	4,957	7,574	11,725	1,218
(점유율)	**(20.7%)**	**(13.6%)**	**(12.8%)**	(19.5%)	(30.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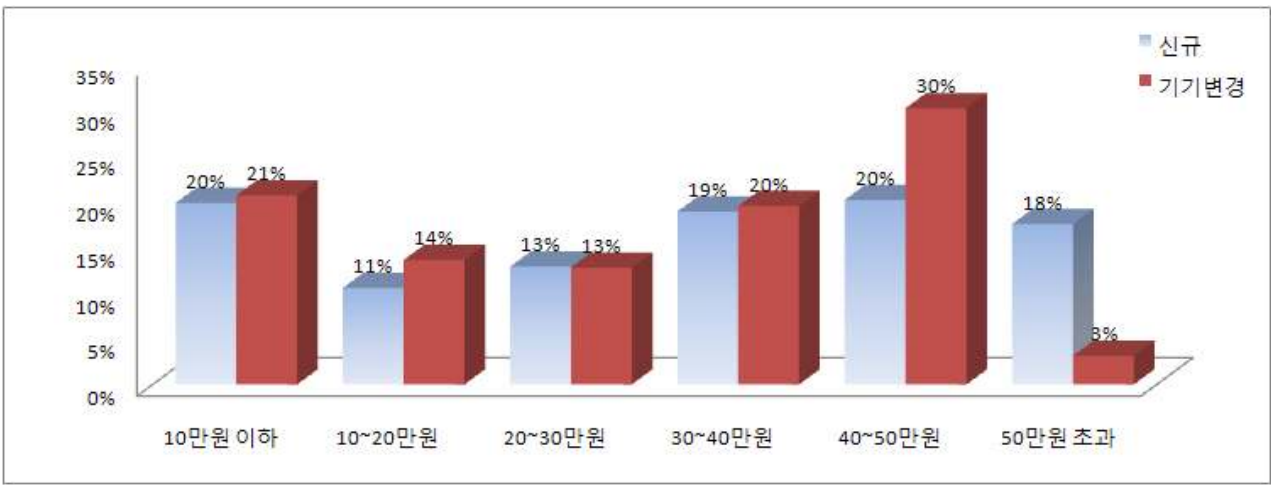

〈 ④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보조금 수준 〉

LGU+의 단말기 판매방식은 약정 보조금 지급시기 및 정도에 따라,

① 단말기 판매시점에 약정 보조금을 일시불 지급하는 “의무약정”, ② 매월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더블할부”, ③ 약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스마트55 요금제 등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슈퍼세이브”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판매비중은 슈퍼세이브가 111,244건으로 62.7%, 의무약정이 60,370건으로 34%를 차지하는 등 양자의 비중이 97%를 초과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 슈퍼세이브의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1월 51.7% → 4월 61.1% → 6월 74.6%)하고 의무약정은 감소(1월 45.3% → 4월 32.4% → 6월 23.3%)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4월 61.1%에서 5월 72.4%로 10% 이상 증가하는 등 갤럭시 S2 출시 등으로 스마트폰 경쟁이 격화된 5·6월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슈퍼세이브	17,203 (51.7%)	18,586 (58.5%)	24,062 (64.5%)	18,424 **(61.1%)**	19,681 **(72.4%)**	13,288 (74.6%)	111,244 **(62.7%)**
의무약정	15,055 (45.3%)	12,137 (38.2%)	12,083 (32.4%)	10,257 (34.0%)	6,694 (24.6%)	4,144 (23.3%)	60,370 **(34.0%)**
더블할부	349 (1.0%)	492 (1.5%)	564 (1.5%)	790 (2.6%)	562 (2.1%)	257 (1.4%)	3,014 (1.7%)
무약정	165 (0.5%)	203 (0.6%)	192 (0.5%)	469 (1.6%)	111 (0.4%)	59 (0.3%)	1,199 (0.7%)
기타	479 (1.4%)	364 (1.1%)	386 (1.0%)	230 (0.8%)	142 (0.5%)	64 (0.4%)	1,665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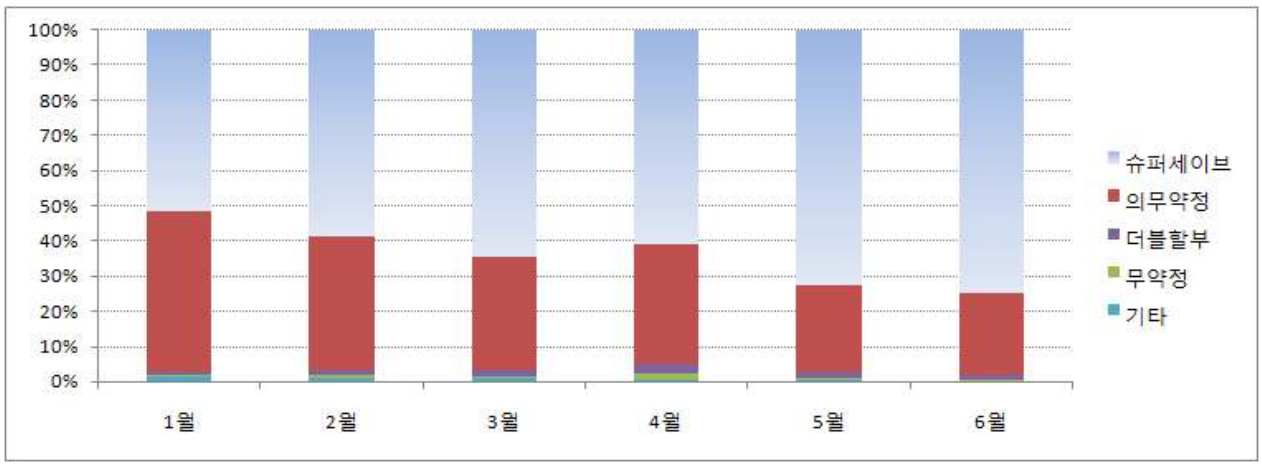

보조금 수준은 의무약정(44.3만원)이 슈퍼세이브(23.2만원)보다 높은 반면, 평균 출고가는 의무약정(48.6만원)이 슈퍼세이브(79.5만원)보다 38.9% 낮게 나타났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평균 출고가 및 보조금 〉

(단위 : 원)

구분	의무약정	슈퍼세이브	더블할부	무약정	기타	총합계
출고가	**486,079**	**795,344**	716,844	275,045	534,392	682,858
보조금	**443,390**	**232,947**	399,893	129,632	290,931	307,206
보조율	91.2%	29.3%	55.8%	47.1%	54.4%	45.0%

아울러, 의무약정은 전체 판매건수 중 스마트폰 비중이 1%에 불과하나, 슈퍼세이브는 80.3%에 달하였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스마트폰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의무약정	슈퍼세이브	더블할부	무약정	기타	총합계
전체 판매대수	60,370	111,244	3,014	1,199	1,665	177,492
스마트폰 판매대수	603	89,334	2,289	186	188	92,600
스마트폰 비중	**1.0%**	**80.3%**	75.9%	15.5%	11.3%	52.2%

즉, 의무약정은 중·저가의 일반 휴대전화 판매 시 약정외 보조금과 결합하여 소위 "공짜폰" 판매에 활용되는 반면,

슈퍼세이브는 고가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되고, 요금할인이 일정 부분 보조금을 대체하는 관계로 보조금 수준은 의무약정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5·6월은 번호이동 가입자수나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이 심화되었으나, 갤럭시 S2 출시 이후 주로 스마트폰과 연계된 슈퍼세이브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 ⑤ 단말기 유형에 따른 보조금 수준 〉

조사대상 기간 중 1월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전화보다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월에는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2.9%에 불과하였으나, 2월에 56.9%를 거쳐 6월에 72.3%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전화 판매 비중 〉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
스마트폰	950 (2.9%)	18,070 (56.9%)	22,872 (61.3%)	18,127 (60.1%)	19,704 (72.5%)	12,877 (72.3%)	92,600 (52.2%)
일반 휴대전화	32,301 (97.1%)	13,712 (43.1%)	14,415 (38.7%)	12,043 (39.9%)	7,486 (27.5%)	4,935 (27.7%)	84,892 (47.8%)
전체	33,251	31,782	37,287	30,170	27,190	17,812	177,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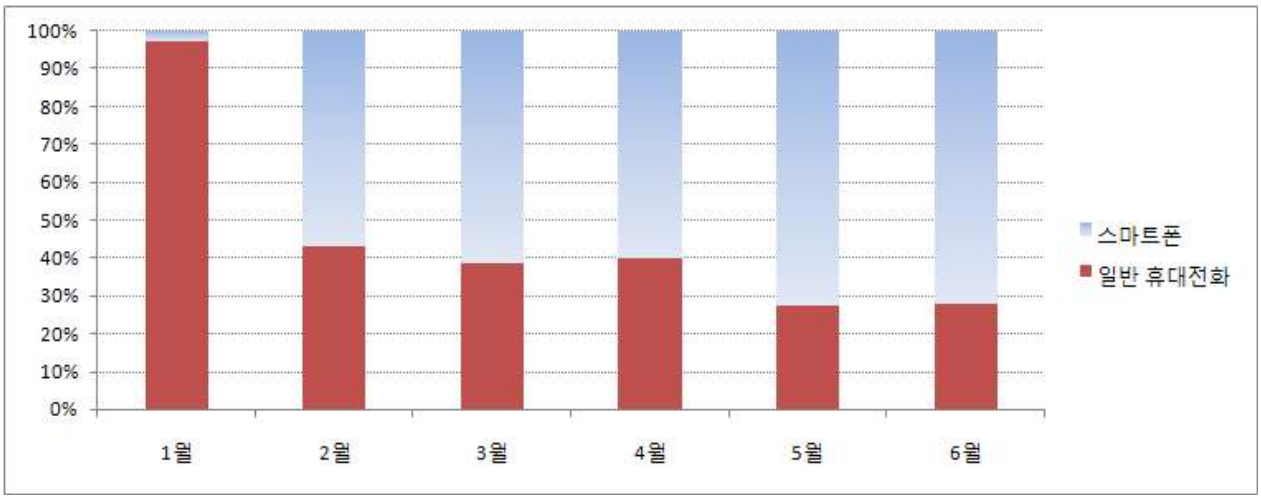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요금할인 위주의 슈퍼세이브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평균 보조금과 보조율(24.7만원, 29.8%)이 전체 평균(30.7만원, 45%)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 휴대전화는 단말기 자체 할인에 집중하는 의무약정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평균 보조금과 보조율(37.7만원, 69.9%)이 스마트폰보다 높게 나타났다.

〈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전화 보조금 및 보조율 〉

(단위 : 건, 원)

구분	개수	출고가	보조금	보조율
스마트폰	92,600	813,098	**242,336**	**29.8%**
일반 휴대전화	84,892	540,793	**377,966**	**69.9%**
전체	177,492	682,858	307,206	45.0%

〈 ⑥ 보조금 차별의 정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기변경보다는 신규 가입자, 슈퍼세이브보다는 의무약정 단말기 구매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구매자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바,

같은 가입형태·같은 지급방식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 차별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중 의무약정과 슈퍼세이브 각각의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의 보조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의무약정으로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신규 가입자간에는 최대 50.8만원, 기기변경 가입자간에는 최대 47.5만원까지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였고 (LG-LU4300(롤리팝2), 출고가 55.5만원),

‹ 의무약정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 보조금 차이 ›

(단위 : 원)

모델	출고가	가입유형	보 조 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차이
LG-LU1600 (아이스크림2)	455,400	신규	436,180	95.8%	455,400	47,000	408,400
		기기변경	427,113	93.8%	455,400	58,400	397,000
SPH-W8350 (매직홀)	499,400	신규	481,952	96.5%	499,400	27,000	472,400
		기기변경	424,775	85.1%	499,400	80,000	419,400
LG-LU4300 (롤리팝2)	555,500	신규	510,770	91.9%	555,500	47,000	**508,500**
		기기변경	428,978	77.2%	555,500	80,000	**475,500**
SHC-Z120L (WiFi 폴더)	455,400	신규	417,118	91.6%	455,400	21,400	434,000
		기기변경	416,031	91.4%	455,400	21,400	434,000
SPH-W9350 (코비F)	374,000 ~528,000	신규	425,739	91.0%	528,000	40,000	488,000
		기기변경	323,137	69.7%	528,000	80,000	448,000

슈퍼세이브로 동일 단말기를 구매한 신규 가입자간에는 최대 90.9만원(IM-A720L(베가X), 출고가 88.5~92.9만원), 기기변경 가입자간에는 최대 89.7만원까지 보조금 차이가 발생(LG-LU3000(옵티머스 마하), 출고가 75.9~89.9만원)하였다.

‹ 슈퍼세이브 판매량 상위 5개 단말기 보조금 차이 ›

(단위 : 원)

모델	출고가	가입유형	보 조 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차이
IM-A720L (베가X)	885,500 ~929,500	신규	234,415	25.7%	909,500	0	**909,500**
		기기변경	265,687	29.2%	809,500	0	809,500
SHW-M130L (갤럭시U)	799,700 ~899,800	신규	285,787	33.9%	889,800	0	889,800
		기기변경	250,615	30.0%	775,700	0	775,700
LG-LU3000 (옵티머스 마하)	759,000 ~899,800	신규	277,898	31.0%	897,400	0	897,400
		기기변경	314,575	35.1%	897,400	0	**897,400**
SHW-M250L (갤럭시S2)	847,000	신규	44,905	5.3%	837,000	0	837,000
		기기변경	118,738	14.0%	824,600	0	824,600
IM-A690L (미라크)	671,000 ~726,000	신규	312,301	44.1%	723,600	0	723,600
		기기변경	290,549	41.6%	668,600	0	668,600

3. 위법성 판단

가.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3] V.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위법성 판단기준

〈 ① 개 요 〉

피심인은 구매시기·가입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차별로 인하여 혜택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 집단 내에서도 최소 0원~최대 90.9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되고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차별 행위가 이용자의 편익과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간 차별의 정도가 비용 또는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② 구체적 판단기준 〉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3]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3) ’09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1개월, KT는 20개월, LGU+는 19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다. 위법성 판단

〈 ① 27만원 초과건수 등 〉

위 기준에 의할 때 피심인의 조사대상 보조금 지급건 177,492건 중 27만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수준에 해당하는 건수는 107,000건(60.3%)이다.

한편, 조사대상 건 중 개통일 기준으로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63개 기종 중 LG-LU1600, SPH-W8350 등 40개 기종(판매건수는 30,409건)이다.

〈 ② 유형별 위반 정도 〉

위반 정도를 기간, 가입형태(신규/기기변경 등), 약정보조금 지급방식(의무약정/슈퍼세이브 등), 단말기 유형(스마트폰/일반폰) 별로 분석하였다.

월별로는 2월 위반율이 58.6%로 제일 높고, 6월이 25.6%로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 월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1월	33,251	6,851 (20.6%)	651,434	352,187	23,959 (72.1%)	17,462 (52.5%)
2월	31,782	5,324 (16.8%)	695,929	368,824	23,540 (74.1%)	18,617 **(58.6%)**
3월	37,287	6,938 (18.6%)	693,753	324,938	23,821 (63.9%)	17,372 (46.6%)
4월	30,170	4,428 (14.7%)	646,612	295,214	16,890 (56.0%)	13,526 (44.8%)
5월	27,190	4,294 (15.8%)	713,359	239,754	12,119 (44.6%)	8,693 (32.0%)
6월	17,812	2,574 (14.5%)	710,229	199,447	6,671 (37.5%)	4,552 **(25.6%)**
합계	177,492	30,409 (17.1%)	682,858	307,206	107,000 (60.3%)	80,222 **(45.2%)**

가입형태별로는 신규가 47.9%(번호이동 신규는 46.5%, 일반신규는 49.8%), 기기변경은 35.5%로 신규 가입건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건수(위반율)
신규	138,715	19,713 (14.2%)	699,027	313,175	84,815 (61.1%)	66,469 **(47.9%)**
일반신규	*59,317*	*11,556 (19.5%)*	*653,392*	*344,586*	*40,189 (67.8%)*	*29,526 (49.8%)*
번호이동	*79,398*	*8,157 (10.3%)*	*733,121*	*289,708*	*44,626 (56.2%)*	*36,943 (46.5%)*
기기변경	38,777	10,696 (27.6%)	625,019	285,851	22,185 (57.2%)	13,753 **(35.5%)**
합계	177,492	30,409 (17.1%)	682,858	307,206	107,000 (60.3%)	80,222 **(45.2%)**

보조금 지급방식별로는 의무약정이 60,370건 중 28,178건(46.7%)으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슈퍼세이브도 111,244건 중 48,910건(44%)로 의무약정과 슈퍼세이브의 위반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의무약정 판매건 중 90.1%가 27만원을 초과하나, 재고 단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최종 위반율은 절반 수준인 46.7%로 감소하였다.

〈 약정보조금 지급방식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위반율)
의무약정	60,370	28,823 (47.7%)	486,079	443,390	54,382 **(90.1%)**	28,178 **(46.7%)**
슈퍼세이브	111,244	657 (0.6%)	795,344	232,947	49,177 (44.2%)	48,910 **(44.0%)**
더블할부	3,014	47 (1.6%)	716,844	399,893	2,332 (77.4%)	2,298 (76.2%)
무약정	1,199	584 (48.7%)	275,045	129,632	170 (14.2%)	139 (11.6%)
기타	1,665	298 (17.9%)	534,392	290,931	939 (56.4%)	697 (41.9%)

단말기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위반율은 46%, 일반 휴대전화는 44.4%로 비슷한 위반율을 보였다.

다만, 일반 휴대전화는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75.6%이지만, 재고단말기 비중이 매우 높은 관계로 실제 위반율은 44.4%에 그쳤다.

〈 단말기 유형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구분	개수	재고(비율)	출고가	보조금	27만원 초과(비율)	위반(위반율)
스마트폰	92,600	251 (0.3%)	813,098	242,336	42,821 (46.2%)	42,570 **(46.0%)**
일반 휴대전화	84,892	30,158 (35.5%)	540,793	377,966	64,179 **(75.6%)**	37,652 **(44.4%)**
합계/평균	177,492	30,409 (17.1%)	682,858	307,206	107,000 (60.3%)	80,222 (45.2%)

판매량 상위 10개 단말기 중 갤럭시 S2(위반율 3.5%), 재고 단말기인 LG -LU1600(11.3%)을 제외하면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 모두 최소 40.5%에서 최대 59.2%까지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 기종별 위반건수 및 위반율 〉

(단위 : 건, 원)

순번	구분	개수	출고가	보조금	위반건수	위반율
1	IM-A720L (베가X)	21,548	885,500 ~929,500	241,311	10,957	**50.8%**
2	SHW-M130L (갤럭시U)	19,767	799,700 ~899,800	281,700	9,730	**49.2%**
3	LG-LU1600 (아이스크림2)	19,706	455,400	428,354	2,217	11.3%
4	LG-LU3000 (옵티머스 마하)	11,865	759,000 ~899,800	287,358	7,030	**59.2%**
5	SHW-M250L (갤럭시S2)	11,088	847,000	75,161	385	3.5%
6	IM-A690L (미라크)	10,594	671,000 ~726,000	313,439	6,763	**63.8%**
7	LG-LU3700 (옵티머스 원)	8,268	594,000 ~649,000	259,165	4,617	**55.8%**
8	LG-LU3100 (옵티머스 시크)	8,068	726,000	291,203	4,713	**58.4%**
9	SHC-Z120L (WiFi 폴더)	7,976	455,400	281,919	4,358	**54.6%**
10	LG-LU6800 (옵티머스 빅)	7,817	847,000	182,461	3,162	**40.5%**

◆ 예외 사유(재고 단말기 소진 목적의 보조금)까지 고려한 피심인의 최종 위반건수는 전체 조사건수 177,492건 중 80,222건(45.2%)

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과열경쟁 주도 여부 판단에 있어, 피심인의 상반기 가입자 순증 점유율이 14.3%로 낮다는 점과 번호이동 실적 및 010신규 실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과열 주도 사업자는 이통 3사가 협의하여 만든 “시장 모니터링 지표”에 의한 벌점이 제일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지표를 개정할 때 시장에서의 순증 점유율, 010신규 실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ii)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 (iv)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판매가·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v)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및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50억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10.9월 의결건 대비 위반율이 48%에서 45.2%로 다소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되,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0.5% 이내)	중대 (부과기준율 0.5~1%)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1~2.5%)
LGU+	6,060	30.3 이내	30.3 ~ 60.6	60.6 ~ 151.5

부과 기준율은 재발한 점을 고려하여 '10.9월 의결건의 0.25%(중대성 약함 상한액의 50%)에서 0.4%(상한액의 80%)로 높여 부과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24억2천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피심인의 과징금은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이 제일 높았고, 본사 차원에서 가입비·할부보증보험료 면제를 지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허위자료를 제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임시보관 봉인을 파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 기준 과징금에서 30%를 가중한 31억5천만원으로 결정한다.

7.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 9. 19.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홍 성 규 (인)
	위 원	김 충 식 (인)
	위 원	신 용 섭 (인)
	위 원	양 문 석 (인)